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3

제출년월일 : 1999. 8.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출장소장 직급등의 조문 정비와,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조문정비(안 제3조, 제5조)
  - 출장소장 및 지소장 직급 삭제 → 규칙으로
- 불합리한 사항 정비(안 제6조)
  - 도지사가 따로 정함(직급·정원) →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3. 의안전문 : 붙임

###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6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1조(설치) 원격지주민의 행정편의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충청북도증평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및 관할구역)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신도시개발사업추진
2. 신도시개발에 따른 계획수립 추진
3. 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할구역내 종합행정추진

제5조(지소) ①출장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천지소, 장평지소, 도안지소를 둔다.

②지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제6조(공무원) 출장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조례규칙등) 출장소 행정처리에 필요한 조례규칙등은 괴산군 자치법규에 의한다. 다만, 그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별도의 특별조례규칙을 정할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충청북도증평출장소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증평읍 일원 도안면 일원

(별표 2)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증천지소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증평읍 : 증평리, 용강리, 사곡리, 덕상리 남차리, 울리, 죽리, 남하리
장평지소	괴산군 증평읍 교동리	증평읍 : 교동리, 중동리, 대동리, 초중리, 연탄리, 송산리, 미암리
도안지소	괴산군 도안면 화성리	도안면 : 화성리, 노암리, 연촌리, 송정리, 광덕리, 석곡리, 도당리

# 관련 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106조

제106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

제12조의3(사업소 및 출장소) ②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사업본부,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의 기준은 별표6과 같다.

### [별표 6]

#### 2. 출장소의 장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구 분	장의 직급	국장 또는 국장급담당관	과장 또는 담당관
도의 출장소	3급 또는 4급	4급	5급
시,자치구의 출장소	5급 또는 6급		
읍,면의 출장소	6급		